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년 10월 5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13일

3. 제안이유

-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 관리에 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식품 거점단지 내 시험연구사업 실시과정에서 생산된 양식수산물의 분양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수산물유통시설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19조제2항)
- 양식수산물 분양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장, 제25조 및 제26조)
- 오기 정정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23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

가. 제출배경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산물 등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수산 식품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각종 의사결정 체계를 효율화, 실무화하고 수산 식품단지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나. 주요 검토내용

- 안 제6장, 제25조 및 제26조는 수산식품 거점단지 연구소에서 생산한 양식수산물을 유·무상 분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분양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 ▶고급 어종인 쏘가리의 경우 공급이 불규칙하고 단가 변동이 심하여 민물 어류를 취급하는 단지 내 유통시설의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음
- ▶대부분의 민물 어류는 수입산 또는 불법 유통물이 많아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은 실정으로 관(官)에서 생산한 수산물 공급이라는 홍보를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과 안정적인 단지 운영에 필요

- 안 제19조제2항은 운영위원회 구성상 최고 권한 체계가 상향되어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권한 체계 완화가 필요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위원장> : 행정부지사, <부위원장> : 농정국장

-(개정) <위원장> : 농정국장, <부위원장> : 축수산과장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산물 등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책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양식수산물을 유·무상 분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 또한, 우리도 현실에 맞도록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을 실무에 적합하게 의사결정 체계를 개정하여 반영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